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26종 개정

- 데이터3법의 통과로 출범한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20.8.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방송통신위원회 및 행정안전부가 발간하였던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26종을 개정 및 재발간하였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 개정은 개인정보 관련 규제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존에 소관부처별로 산재하여 있던 개인정보 관련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일괄적으로 개정하여 발표하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 개정된 가이드라인 및 안내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관한 특례 등)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현행화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안내서	주요내용
1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매뉴얼’ (2016.8.31.)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9조의4 및 「신용정보의 이용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4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대응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항을 안내
2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 (2018.11.) 개정 •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노출 원인별 구체적인 사례 및 조치방법 안내
3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 포함)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2016.11.) 개정 •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없애는 등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 수집, 정보주체의 실질적 동의권 보장,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등에 대하여 안내
4	민간분야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발간 ‘민간분야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 (2015.1.12.)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민간분야 · 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보호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안내
5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발간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예시[공공기관/민간/소상공인용]’ (2011. 12.) 통합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 예시 안내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2016.4.)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을 구축 · 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안내
7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18.9.)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종전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장의 특례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의무 안내

	가이드라인/안내서	주요내용
8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2019.3.)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1에 따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않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외(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안내
9	개인정보 처리 위 · 수탁 안내서	• 행정안전부 발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2018.6.)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를 위 · 수탁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알아야 할 조치사항을 위 · 수탁 단계별로 제시
10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안내서’ (2017.1.) 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등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의 저장·전송 시 적용할 수 있는 암호 알고리즘, 수행방식, 사례 등을 제시
11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 (2019.6.) 개정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파기,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개인정보 안전조치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및 조치사항 안내
12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자동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2020.2.) 개정 • IoT 기기 등으로 개인정보를 자동처리 할 경우 기획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Privacy by Design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고려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안내
13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제2020-5호) 해설서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의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 (2017.12.) 개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대한 해설 제공
14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제2020-2호) 해설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2019.6.) 개정 •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치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보호조치에 관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한 해설 제공

	가이드라인/안내서	주요내용
15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2012.3.)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3항,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을 위한 「위험도 분석」의 세부 기준 제시
16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 방송통신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2016.4.) 개정 •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상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타인의 접근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17 ~ 20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4종(의료기관/약국/사회복지시설/학원교습소)	•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발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사회복지시설편/약국편]’ (2013.12.),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료기관편]’ (2015.2.), 행정안전부 · 교육부 발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학원 · 교습소편]’ (2015.12.), 행정안전부 · 고용노동부 발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 · 노무편]’ (2015.12) 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업무 분야 별 개인정보 처리기준,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 안내
21 ~ 26	자율규제단체 참여사를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 6종(대중골프장업/렌터카업/여행업/학원업/호텔업/공인중개사업)	• 행정안전부 · 한국인터넷진흥원 발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참여 회원을 위한 업종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여행 · 학원 · 호텔 · 대중골프장 · 렌터카편]’ (2019.11.) 분리 개정 및 공인중개사업편 제정 •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업종별로 분리하여 개정 발간하고, 공인중개사업편을 새롭게 제정하였으며, 업종별 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활동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

법무법인(유) 세종은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개인정보 관련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T. 02-316-4059

E.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T. 02-316-4410

E. jyojang@shinkim.com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T. 02-316-4290

E. khpark@shinkim.com



황정현

소속변호사

T. 02-316-1775

E. jhhwang@shinkim.com



윤호상

소속변호사

T. 02-316-2584

E. hsyoon@shinkim.com



정동주

소속변호사

T. 02-316-1981

E. djjeong@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